

승강기 의장재질 관리요령

스테인리스 미러 · 용이나 부드러운 헝겊을 이용해 먼지를 털어준다.
· 지문 등의 오염은 부드러운 헝겊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준다.

스테인리스 스틸 · 용이나 부드러운 헝겊을 이용해 닦아준다.
· 수용성 중성세제를 물에 희석하여 부드러운 헝겊에 묻혀 닦아낸 후 마른 헝겊으로 물기를 제거한다.

메탈플러스 본디드메탈 · 용이나 부드러운 헝겊을 이용하여 소재결 방향에 따라 먼지를 털어준다.
· 수용성 중성세제를 물에 희석하여 부드러운 헝겊에 묻혀 닦아낸 후 마른 헝겊으로 물기를 제거한다.

메탈코트 · 용이나 부드러운 헝겊을 이용하여 닦아준다.
· 윤활방청제를 부드러운 헝겊에 묻혀 닦아준다.

도장강판 · 용이나 부드러운 헝겊을 이용하여 닦아준다.
· 수용성 중성세제를 물에 희석하여 부드러운 헝겊에 묻혀 닦아낸 후 마른 헝겊으로 물기를 제거한다.

우드 · 용이나 부드러운 헝겊을 이용하여 먼지를 털어준다.
· 스프레이 가구 광택제를 부드러운 헝겊에 묻혀 닦아준다.

주의사항

- ✓ 시너, 아세톤, 락스, 계면활성제, 컴파운드 등은 사용을 금지해주시오.
- ✓ 거친 천이나 금속성 브러시 등을 사용하면 스크래치 또는 파손을 입힐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십시오.
- ✓ 다량의 물과 강알칼리 성분의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 시 승강기 내부 벽으로 스며들어 전기 안전과 녹 발생에 의한 의장재 박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십시오.
- ✓ 물을 이용한 세척 후에는 마른 헝겊으로 물기를 제거해주어야 물 얼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✓ 스테인리스 필름을 장기간 부착 시 화학 반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건물 준공 정상화 이후 필름을 제거하고 사용하십시오.

고객안내문 (Customer Instructions)

취득세

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 보험

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

승강기 의장재질 관리요령

취득세

● 법적근거

「지방세법」 제6조 6호 다목,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6조 제1호

● 과세대상

건축물에 딸린 승강기(엘리베이터, 에스컬레이터, 그 밖의 승강시설)를 설치(교체포함)하거나 또는 수선하는 경우

* 건축물 신축·대수선 시 승강기를 설치하여 건축물 취득세에 포함·납부한 경우 제외

● 납세의무자

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

● 세율 및 신고납부기한 등

(과표) 승강기 설치 또는 수선비용

(세율) 2% (설치·수선비용x2%=취득 세액, 농어촌특별세 별도)

(기한) 설치일 또는 수선 일로부터 60일 이내

(방법)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재 시·군·구청(세정부서)에 자진신고 후 납부

* 기한내 신고·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기간에서 직권고지

● 준비서류

승강기 검사합격증 사본, 설치·수선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(계약서, 세금계산서, 법인장부 등)

✓ 취득세 신고, 납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

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 보험

● 관리주체의 보험 가입 의무

「승강기 안전 관리법」 제 30조 1항에 의해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.

✓ 책임 보험의 가입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.

● 보험 가입

승강기를 새로 설치한 관리주체는 「승강기 안전 관리법」 시행령 제27조 2항에 의해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 (합격한 날) /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.

● 보험 미가입시 불이익

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·도지사는 「승강기 안전 관리법」 제82조 2항 제12호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[1차 위반 시 대당 100만원, 2차 위반 시 대당 200만원, 3차 이상 위반 시 대당 400만원]

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

「승강기 안전 관리법」 제29조 1항에 의해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.

✓ 승강기 안전 관리자 선임(변경) 후 3개월 이내 승강기 관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그 이후에는 3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✓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(변경) 통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(변경) 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

· 승강기 민원24 (<https://minwon.koelsa.or.kr>) → 안전관리자 선임, 해임 신청

·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고객센터(1566-1277)로 문의